

임실군의의회 공고 2023 - 36호

「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임실군의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. 10. 16.

임실군의의회의장



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1. 제 안 이 유

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임실군의 어르신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친화도시 구현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 요 내 용

- 가. 목적, 기본이념, 책무에 관한 규정 (안 제1조~ 안 제4조)
- 나. 조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 (안 제5조~ 안 제7조)
- 다.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(안 제8조~ 안 제13조)
- 라. 모니터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(안 제14조~ 안 제15조)

3. 참 고 자 료

- 가. 관련법령 : 『노인복지법』, 『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』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 등 : 집행부 의견조회
- 라. 심사예고 : 2023. 10. 16. ~ 10 .20. (4일간)
- 마. 기 타
 - 1) 제정 조례안
 - 2)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임실군의 어르신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친화도시 구현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① 어르신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.

② 임실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의 어르신복지 정책은 어르신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어르신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어르신친화"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어르신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어르신친화도시"란 어르신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어르신이 선호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거나 어르신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.

제4조(군수의 책무) ① 임실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어르신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어르신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.

② 임실군민(이하 "군민"이라 한다)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

하고 군의 어르신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조성계획 수립 등) 군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분야별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법
3.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자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추진실적 평가) 군수는 필요한 경우 어르신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업비의 지원) 군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어르신친화도시조성 위원회)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·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조성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
2. 어르신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,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
3.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

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어르신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

2. 어르신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

3. 어르신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

4. 그 밖에 군수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2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

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간사 및 회의록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어르신친화도시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.

제14조(모니터단 설치 및 기능) 군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조성 모니터단(이하 “모니터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1.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·점검
2. 일상생활에서 어르신의 생활불편사항 발굴
3.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
4.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
5.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5조(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지원) ① 모니터단은 총 15명 이하로 구성하며,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② 군수는 모니터단 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③ 모니터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『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』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인구의 고령화”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.
2. “저출산·고령사회정책”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·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8조(경제와 산업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·산업 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9조(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·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